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 이415-125	(전화번호)	건설규정 조 항 건설 사항						
처리기간	시 장								
시행일자	김영년								
보존년한	결재 1978. 7. 27 제2부서								
보조기관	제2부시장	전 결	정무관 장관						
	도시정비국장	김영년	심사필						
	도시계획2과장	가로 계획1계장 김							
기안책임자	정한영	'78. 7.	조					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고시제 38호	봉 제						
계 목	도시계획시설(공항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								
제 1 안 내부결재									
1. 서울시고시 제152호('76. 6. 30)로 도시계획시설(공항)로 지적승인된 김포국제공항의 일부지역내에 서울시고시 제390 호('77. 11. 2)로 광로 54로가 신설되어 이와중복되는 공항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'77. 3. 16)의 권한위임사항에의거 법안과같이 고시코저합니다.									
경서	제 2 안 고 시 안		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<table border="1" style="font-size: small;"> <tr> <td>고시제</td> <td>1978. 7. 27</td> <td>228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법제시정</td> <td>법무담당자</td> </tr> </table>		고시제	1978. 7. 27	228	담당자	법제시정	법무담당자
고시제	1978. 7. 27	228							
담당자	법제시정	법무담당자							
도시계획시설(공항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									
1. 서울시 도시계획시설(공항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'77. 3. 16)의 권한위임 규정애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									
발송	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,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냅니다.								

1978. 7.

서울특별시

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김포국제공항	강서구공항동일대	6,428,400 [㎡]	
변경	"	"	6,364,800 [㎡]	광로54호와중복되는 지역 약63,600 [㎡]
법침도면표시와같음(도면생략)				

제 3 안

수신 건설부장관

제목 동건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공항)을 법침과같이 고시하였기

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.

제 4 안

수신 총무처장관(문화공보관)

발신:시장(국장)

제목 관(시)보 게재의뢰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(공항)이 법침과같이 고시되었기 관(시)

보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십시오.

첨부 : 고시문사본 2(1)매.

제 5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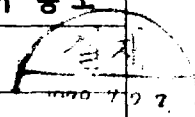
수신 강서구청장

제목 동건

1.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(공항)이 법침과같이 고시되었기 통보

하니 관계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겠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



수신 건설국장

제2부서실

제목 동 건

1. 건행 414-336('78. 3. 31)호외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에 관련된 김포국제공항에 대하여, 벌침과같이

조치하였기 통보하오니 관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

